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이상식
어기구 · 정준호 · 조계원
김남희 · 전용기 · 이강일
문진석 · 김우영 · 정태호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정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5. (생략) 제4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u>1의2.</u> (생략)	<u>제34조의2(시정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 제4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2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2. <u>2의2.</u>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u>2.</u> ~ <u>4.</u> (생략)	<u>3.</u> ~ <u>5.</u>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